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근거 마련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52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근거 마련 등	2

※ 참고자료

[참고 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목록(2026. 1. 기준)	10
[참고 2] 2026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공고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5.
3. 회 부 일 :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이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통합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이하 “통합조직”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조직과 통합조직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u> 3. <u>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u> 4. <u>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④ <u>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통합조직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조직의 지정·지정 취소의 요건·절차, 업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4조(청문) ----- -----

현 행	개 정 안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u><신 설></u>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조직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조직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통합조직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생산-유통의 두 가지 단계, 혹은 구체화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의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등의 형태로 비교적 규모화·전문화된 유통단계와 달리 생산단계는 중소 농업인들이 산재하여 집단화를 통한 품질관리나 수급 조절 등이 어려운 점, 주로 유통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실제 생산자에게 귀속되기 어려운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이들 조직이 유통단계까지 수행하는 형태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증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다수 키위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조직인 제스프리(Zespri)를 인접국인 호주를 제외한 키위 수출의 단일 유통조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 대상·물량 조정, 품질 기준 관리 및 마케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¹⁾²⁾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부터 매년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선발하여 2025년 기준 총 56개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운영 중임.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발 현황³⁾ 】

(단위: 개)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선발조직 수	56	13	7	5	9	22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재가공)

1) 국승용, 「뉴질랜드 원예산업 구조 - 키위·사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pp. 33~41.

2) 제스프리의 경우, 일본에서 소비행태조사, 선호 맛을 기반으로 신품종을 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략적인 수출 전략도 모색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 p. 190.)

3) 자세한 선발현황은 검토보고서 마지막의 [참고자료 1]을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선발 과정에서 이들 생산유통 통합조직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취급액 및 전속취급률⁴⁾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품목을 선정하고 생산과 유통을 계열화하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 사업⁵⁾의 지원대상 요건에 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등을 포함하여 우대함으로써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선발 및 승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과 이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비 지원을 통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자의 조직화 및 규모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전문품목 총 취급액 대비 전속출하액(생산자조직이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출하한 물량의 판매액) 비중

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중 산지조직지원(농가교육, 상품개발, 마케팅 비용 등),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 중 공동선별비 지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

이 경우,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중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를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면 이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은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게 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과는 달리 단순한 사업 참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가 함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관련하여, 업무 정지 대신 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⁶⁾⁷⁾ 현행법 제83조의 과징금 규정⁸⁾을 함께 개정하여 업

6) 일반적으로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를 제재수단으로 활용하는 입법례가 많으나, 지원 제한과 같은 다른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입법례도 존재함

(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임)

7) 이 경우 개정안 중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 제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한편, 업무 정지 기간 내의 업무 수행을 제재하는 안 제7조의2제3항제2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무 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 정지 외의 다른 제재방법을 모색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일반 생산자에게까지 파급될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7조의2제5항에서는 지정 취소의 요건·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를 포함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차 위임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 취소의 기본적인 요건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정 취소의 요건(사유)을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정 취소의 요건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안 부칙 제2조는 현재 운영 중인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별도의 지정 신청 과정 없이 이 법에 따른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볼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제고할 수 있음.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이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제도에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승인’하는 것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지칭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기타 자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안 제7조의2에 따른 통합조직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 규정을 안 제84조제3호에 신설하나, 조 순서를 고려할 때 이를 같은 조 제1호로 해야 할 것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나, 전문적인 가공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업무 범위에서 가공을 제외하고, 제도의 명칭을 지정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승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자료 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목록(2025년 기준)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연번	등록연도	지역		조직명	전문품목
		시도	시군		
1	'21	충북	충주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사과
2			음성	햇사래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복숭아
3		충남	부여	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방울토마토, 수박, 멜론
4			아산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배
5		전북	김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농산	파프리카
6			남원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포도, 복숭아, 파프리카
7			부안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수박, 양파
8			전주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배
9		경북	문경	영농조합법인신미네유통사업단	양파
10			김천	영농조합법인송원APC	사과
11			성주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참외
12		제주	제주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감귤
13			서귀포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
14	'22	충북	충주	충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복숭아
15		전북	전주	농업회사법인(주)로즈피아	화훼류(절화)
16		전남	나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멜론, 미나리
17		경북	상주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복숭아, 포도, 오이
18			상주	해도지영농조합법인	감자
19			칠곡	가교버섯영농조합법인	버섯류
20		경남	거창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	딸기
21	'23	경기	여주	(주)농업회사법인 거산	고구마
22		전북	순창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참두릅
23		전남	함평	청일유통영농조합법인	양파
24		경북	안동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	사과
25		경남	함양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양파
26	'24	충남	금산	만인산농업협동조합	쌈채류
27		전북	김제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감자
28		전남	무안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마늘, 양파
29			무안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	마늘, 양파
30			신안	목포신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시금치
31			강진	(농)탐진들(주)	오이
32		경북	의성	의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가지, 자두
33		대구	군위	군위군조합공동사업법인	파프리카
34		경남	김해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풋고추

연번	등록 연도	지역		조직명	전문품목
		시도	시군		
35	'25	강원	-	농협경제지주강원연합사업단	무, 배추, 호박, 파프리카, 토마토류, 풋고추류, 엽채류
36			평창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감자
37		충북	청주	청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애호박
38			진천	진천군연합사업단	수박
39		충남	논산	논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	딸기
40			공주	공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오이
41			천안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오이
42		전북	익산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상추, 딸기, 수박
43			김제	하랑영농조합법인	토마토
44			장수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토마토, 사과
45			임실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복숭아
46		전남	영암	농업회사법인(주)담아	고구마
47		경북	김천	김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	포도, 자두, 복숭아
48			청송	청송군조합공동사업법인	사과
49			포항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사과
50			영주	영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사과
51		경남	산청	팜팜영농조합법인	수박, 딸기
52			창녕	창녕군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마늘
53			밀양	밀양시조합공동사업법인	고추, 감자, 당근
54			진주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애호박, 딸기 풋고추, 파리고추
55			하동	하동군조합공동사업법인	딸기
56			밀양	열매영농조합법인	딸기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 생산유통통합조직 정의 및 요건

□ **(정의)** 생산자(조직)과 유통조직의 통합(높은 수준의 계열화)을 통한 생산 유통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유통조직

□ **기본요건**

- **(생산유통통합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농협 또는 지역농협, 농협 경제지주, 농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조직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협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 품목농협 또는 지역농협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① 광역원예농협 : 사업지역(정관)이 3개 시·군 이상
 - ② 시·군 합병농협 : 1시·군에 농협이 1개소인 농협
 - ③ 지역(품목)농협연합 : 3개 시·군(또는 2개 도) 이상의 출하조직(농협)으로 구성
 - ④ 지역(품목)농협 : 3개 시·군(또는 2개 도) 이상의 생산자조직으로 구성 또는 동일 시·군 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없고 시·군 내 다른 지역(품목)농협의 동의를 있는 경우
 - * ③, ④는 품목특성, 생산판매여건, 취급규모, 사업목적 및 계획 등 고려하여 별도 심사
 - * 대도시 근교농업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범위를 별도 심사할 수 있음
-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유통전문 자회사 또는 도(道) 지역본부 연합사업단
 - *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정을 받은 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③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④ 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
 - * 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생산자단체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 * 시설하우스(1ha 이상), 대형과원(5ha 이상) 등 대형생산시설을 경영하는 조합원(주주)의 수는 5배수로 인정할 수 있음
 - ⑤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농업회사법인에 한함)
 - * 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 출자지분은 미인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그 외 요건은 농업법인과 동일)

- **(출자출하조직)** 농협(지역, 품목), 농업법인(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 운영 1년 이상, 농업인조합원(주주) 5명이상, 농업인주주 지분 50%이상(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조합원의 50%이상 농업인, 그 외 요건은 농업법인과 동일)

□ 세부요건

- **(생산유통통합조직)** 전문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고 운영계획(3년)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 (승인요건) 품목별 총 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을 갖춘 조직
 - * 전문 취급품목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취급품목들의 동질성·연계성 등 필요
 - * (총취급액) 전문 품목(부류)의 총 취급액이며, 판매액으로 산정
 - * (전속출하액) 생산자조직이 통합조직에 출하한 물량의 최종 판매액으로 산정
 - * (전속취급률)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전문품목 총 취급액 대비 전속출하액 비율

〈 품목군별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 〉

구분	과실류		시설원예		노지채소	
전문 품목별 총취급액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전속취급률 (총취급액 기준)	80~150억원 미만	50%	60~100억원 미만	50%	40~70억원 미만	50%
	150억원 이상	40%	100억원 이상	40%	70억원 이상	40%

- * (총취급액) 과실류 중 참다래, 자두, 베리류는 60억원이상, 시설원예 중 오이, 호박, 가지는 40억원 이상
- * 품목 특성상 고구마는 과실류 기준을 적용하고, 마늘, 양파 등 수급관리 중점품목은 별도 심사 가능
- * 품목 또는 품목부류 기준은 (붙임5) 참조
- * 전문품목 이외에 전문품목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의 50%이상이면 승인가간 이내 전문품목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육성하는 육성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

취급실적 관련 참고 사항

- 전문품목 취급실적은 '24년 실적치 또는 '25년 전망치 중 선택 가능
 - '25년 전망치 선택 조직은 1) '25년 연말 전망치, 2) '24년/'25년 8월말 기준 실적, 3) '24년 연말 실적 제출
 - * 자세한 사항은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파일 참고하여, 운영계획서 및 증빙자료 준비
- 사후관리 방안 : 차년도 연차평가('26.2 평가) 시 '25년도 실적점검 및 결과 활용
 - ('24년 실적치로 승인된 조직) '25년 실적점검 시 승인요건 미달된 전문품목이 있을 경우, 전문품목 지위는 유지하되 "승인요건 1년차 미달 조직"으로 패널티 부여 (2년 연속 승인요건 미달 시 통합조직 승인취소)
 - ('25년 전망치로 승인된 조직) '25년 실적점검 시 승인요건 미달된 전문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요건 충족된 전문품목으로만 최종 선정 (별도 패널티는 미부여, 전문품목이 1개인 통합조직은 승인취소)

- **(출자출하조직)** 생산자조직이 출하한 전문품목의 생산유통통합조직에 판매위임금액 5억원 이상, 출자출하조직 취급액의 40% 이상 및 생산자조직 출하금액의 50%이상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
- **(생산자조직)** 동일한 품목 농가 5명 이상 구성, 출하금액 2억원 이상, 계약물량의 전량(80% 이상)을 출하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농가 모두 생산자조직 결성·운영

2. 생산유통통합조직 신청 및 승인 계획

□ (모집규모) 30개소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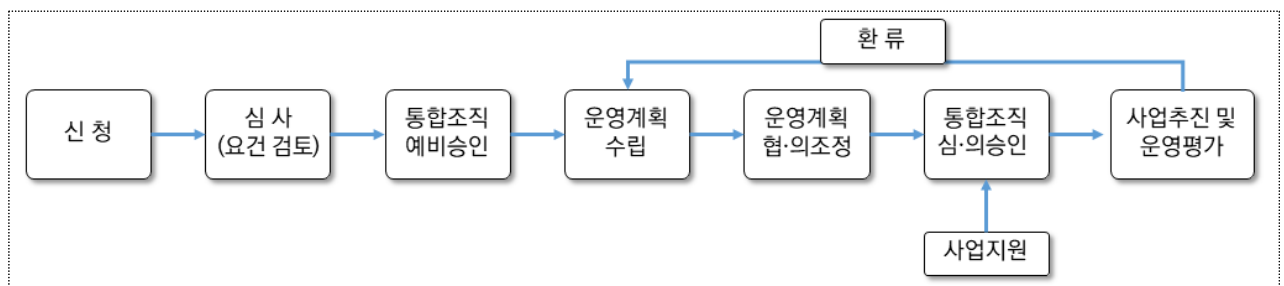
- 대상품목 : 신청 조직 자율 선정

* 의무자조금 설치 여부, 수급관리 중요성, 조직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생산유통통합조직 기본요건 및 세부요건을 갖춘 조직

□ (승인절차) 신청서(붙임1 참조), 운영계획서(붙임3 참조) 및 승인신청시 제출서류(붙임2 참조)를 작성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심사, 예비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협의·조정(컨설팅 지원)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 (지원내용)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대상 사업(18개) 우선·우대 지원

구분	사업명
통합조직에 한정(7개)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 공동선별비지원(광역, 지역), APC(일반, 과수거점, 과수유통시설), 산지조직지원,
통합조직 우선·우대 (11개)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 에너지시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ICT융복합, 과실생산기반 조성, 수급안정계약재배(채소), 농산물 생산유통조절지원, 물류 기기공동이용지원,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 신청기한 및 제출처

- 신규 승인형 생산유통통합조직 신청 희망업체는 2025.9.26.(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 (책자인쇄본) 통합조직별 신청서, 운영계획서 및 증빙자료

(파일) 통합조직별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적검토 양식 및 증빙자료

* 책자인쇄본 [신청서(붙임1)&운영계획서(붙임3) 6부, 증빙자료(붙임2) 2부]은 aT 산지유통부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0층)로 9/26(금)까지 제출 (9/26(금) 도착분에 한하여 제출 인정)

* 신청서, 운영계획서, 증빙자료, 실적검토 양식 파일(한글, 엑셀, PDF 등)은 메일(sanji@at.or.kr)로 제출

□ 주요일정(안) * 세부일정은 참고자료 확인

-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25.8.25. ~ 9.26.)
- 선정 심사(10월)
 - 요건검토(aT, 9.29~10.17), 전문가 심사(개별검토 10.21~10.24, 종합검토 10.27~10.29)
- 조직별 운영계획 컨설팅 등 지원(11월)
- 운영계획 심의 및 승인(12월)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2025년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지침 (붙임6)」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